

공정거래 협약서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사 에이테크솔루션(주) (이하 “1차 협력사” 라 한다)는 세종정기(주)(이하 “2차 협력사” 라 한다)와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는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을 산업전반의 생태계 및 기업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한다.

제2조, 1차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위해 2차 협력사와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사용 하도록 한다.

제3조, 1차 협력사는 2차 이하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물대는 만기 60일 이상의 어음에 의한 결제를 없애도록 하고,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1차 협력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의 공급원가 인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즉시 2차 협력사에 알리고, 그 취지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한다.

제5조,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 기술자료를 동의없이 요구하거나 무단으로 유출, 유용하지 않는다.

제6조,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 관행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 합리적 단가산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삼성전자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상생협력의 수혜가 3차 협력사에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등 상생결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1차 협력사는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하도급법 교육 참석 및 자체 준법교육 등을 실시하여 2차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1차 협력사는 깨끗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로부터 향응, 금품수수, 부당한 청탁 등 일체의 불건전한 행위를 근절한다.

제11조, 2차 협력사는 품질혁신,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을 추진하여 전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제12조,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와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1,2차간의 협약내용이 3차 협력사에도 실천되도록 노력한다.

이 협약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상호 성실히 준수해야 하나,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2020년 1월 31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대표이사 유영목 (인)

대표이사 이종영 (인)